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

2021년 10월 1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노 형 욱

●대통령령 제3205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보관·전시하기”를 “보관·전시(展示)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운행하려는 경우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15호”를 “제15호·제15호의2”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마목 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1조의4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법 제7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4조제3항제5호	해당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	100억원
---	--------------	---------------------------------	-------

별표 1의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제2호 각 목의 과징금 산정비율란의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내압용기의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간접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1. 자동차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	계산식
제2호가목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하 이 비고에서 “시정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자동차 제작자등이 공개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를 말한다]의 매출액=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제2호다목	매출액=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제2호라목	매출액=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로서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했을 때 판매되지 않았던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2. 자동차부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	계산식
제2호나목	매출액=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부품을 말한다)의 개수 × 해당 자동차부품의 판매가격
제2호다목	매출액=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부품의 개수 × 해당 자동차부품의 판매가격
제2호라목	매출액= 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 공개한 시정조치계획에 포함된 자동차부품으로서 시정조치계획을 공개했을 때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부품 중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부품의 개수 × 해당 자동차부품의 판매가격

3. 내압용기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	계산식
제2호마목	매출액=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판매한 개수 × 해당 내압용기의 판매가격

별표 2 제1호라목 중 “제2호허목”을 “제2호로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처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폐차 처리 요청 기간 내에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3호의2	100
---	-----------------------	------------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300

커. 법 제31조의4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 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	100
---	-----------------	-----

별표 2 제2호고목(중전의 폐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

별표 2 제2호로목(중전의 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및 2022. 4. 14. 시행)됨
--

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의 원활한 국내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